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승교육사 인정 대상 확대 등 〉

■ 정연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571호)

2025. 1.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무형유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국회 보고(안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의2)	2
2. 전승교육사 인정 대상 확대(안 제19조제1항)	6
3. 우수 이수자 추천권자 확대(안 제25조제4항)	1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정연욱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2024. 11. 14.

다. 회 부 일: 2024. 11.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적인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승교육사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실적에 대해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규정되지 않아 계획 이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무형유산 보유자와 전승교육사의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일반 전승자들이 무형유산 제도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청장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전승교육사의 자격요건에서 이수자로 한정하는 규정을 폐지하며,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시 전승교육사의 추천권을 추가함으로써 무형유산의 지속적 보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 제8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국가유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국회 보고(안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의2)

가. 개정안 요지

- 무형유산의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안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의2).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u>시행계획을</u> <u>매년</u>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 ----- <u>연도별</u> <u>시행</u> <u>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u> <u>한</u> <u>다)</u> 을-----.
② 시·도지사는 <u>제1항에 따라</u> <u>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u> <u>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u>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u>해당 연도의</u> <u>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u> <u>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u> <u>따라 매년</u> ----- -----.
③·④ (생략) <u><신설></u>	③·④ (현행과 같음) <u>제8조의2(국회 보고) 국가유산청</u> <u>장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u>

	<u>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 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	---

다. 검토사항

- 국가유산청장은 현행법 제7조에 따라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자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¹⁾,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 등에 고시해야 함(자료: 참고1)²⁾.
- 현행법 제8조는 국가유산청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1) 현재 무형유산 정책은 2022년에 1월에 수립된 제2차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2022~2026년)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무형유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의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무형유산의 조사, 기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5. 무형유산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전승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무형유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³⁾, 시행령 제3조는 시행계획에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및 세부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고,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⁴⁾.

- 그런데, 국회에서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추어 무형유산 관련 법안을 제·개정하고, 무형유산 제도개선 추진과 정책에 맞게 예산을 심의·의결하는데 국가유산청 등에서 작성하는 무형유산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등의 자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가 국회에 제출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 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 계획
 4.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이에 개정안은 무형유산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무형유산 정책에 대한 국회의 관심도를 제고하여 국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안·예산안 심의를 지원하는 한편, 무형유산 정책의 계획, 시행 및 환류 과정상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2. 전승교육사 인정 대상 확대(안 제19조제1항)

가. 개정안 요지

- 무형유산 전승교육사의 인정 대상을 이수자로 제한하는 현행 내용을 폐지함(안 제19조제1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u>이수자 중에서</u>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전승교육사를 인정할 수 있다.</u>	제19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 ----- ----- <u>전승교육사를</u> ----- ----- <u>인정할</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전승교육사’는 현행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이고⁵⁾, ‘이수자’는 현행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임⁶⁾.

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전승교육사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승교육사는 현행법 제19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은 전승교육사 인정 기준을 국가무형유산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하거나 시·도무형유산 보유자로서 경력이나 전승교육사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국가무형유산의 이수자가 된 이후 1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중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전승 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⁷⁾(자료: 참고2).

○ 그런데, 동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는 무형유산 보유자⁸⁾ 인정 기준으로⁹⁾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6)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수교육(제30조에 따른 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국가무형유산의 분야별 중목을 미리 선정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중목의 이수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승교육사로 인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국가무형유산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나. 시·도무형유산 보유자로서의 경력이나 전승교육사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국가무형유산의 이수자가 된 이후 1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해당 시·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3.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4.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했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전승교육사 인정의 세부 기준과 기준별 배점 등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9)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

갖출 것,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및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이라는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이수자, 시·도무형유산 보유자·전승교육사·이수자 또는 일반 전승자¹⁰⁾라면 누구라도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에, 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 신청은 이수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무형유산 전승교육을 확대하고 무형유산 전승체계를 다양화·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신청의 경우와 같이 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 신청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무형유산 전승교육사의 인정 대상을 이수자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전승교육사

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보유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보유단체 외에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보유자 등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또는 단체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1.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10)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③ 이 규정에 서 "일반전승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승자 및 법 제32조에 따른 시·도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이수자가 아닌 자로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실연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무형유산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무형유산 관련 분야의 전국 규모의 대회 등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
3. 무형유산 실기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서 5년 이상 강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가유산 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 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인정 대상을 이수자 뿐만 아니라 기량과 역량을 갖춘 일반전승자까지 확대하여 무형유산 전승체계를 개선하고, 평균 연령이 해마다 높아지는 등으로 인해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기량이 쇠퇴하는 무형유산¹¹⁾ 또는 종목 이수자가 없거나 소수인 무형유산¹²⁾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일부 지자체(경기도, 충청남도)는 기량이 부족한 자가 전승교육사가 될 수 있어 무형유산의 전형이 훼손되고 단절될 가능성 등이 있으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임.

11) (2020년) 보유자 73.6세, 전승교육사 63.5세 →(2024년) 보유자 75.2세, 전승교육사 64.4세

12) 무형유산 개인 68개 종목 중 이수자 5인 이하 21개 종목(30.9%)

3. 우수 이수자 추천권자 확대(안 제25조제4항)

가. 개정안 요지

-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시 전승교육사도 우수 이수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국가무형유산의 보호·육성) ① ~ ③ (생략)	제25조(국가무형유산의 보호·육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는 국가무형유산의 이수자 중에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u>보유단체</u> 또는 제30조에 따른 전승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 ---- <u>전승교육사, 보유단체</u> ---- ----- ----- ----- ----- ----- -----.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국가무형유산의 이수자 중에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의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³⁾.
- 동법 시행령은 국가유산청장이 이수자가 된 이후 3년 이상 전승 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전수교육에 참여하고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하고, 우수 이수자에게는 공연, 전시, 교육, 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¹⁴⁾, 무형유산 전승 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있음.

1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국가무형유산의 보호·육성) 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국가무형유산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전수교육사는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국가무형유산의 이수자 중에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전승공동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6항에 따른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우수 이수자의 선정·지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이수자가 된 이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에게 공연, 전시, 교육, 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우수 이수자를 추천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전승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국가유산청은 2024년에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장려금 16억 6,8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국가무형유산 전체 이수자 7,488명('24.11.30.기준) 중에서 1차 서류심사와 2차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290명의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연간 600만원 내외의 전승활동 장려금을 지급하였음(자료:참고3)¹⁵⁾.
- 그런데 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및 전수교육학교 모두 무형유산 전수교육을 직접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전승교육사에게는 우수 이수자 추천권한이 없어 전승교육사에게 전수교육을 받고 이수자 자격을 부여받은 이수자가 우수 이수자 선정·지원에서 배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전수교육의 주체인 전승교육사가 우수 이수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역량있는 이수자가 추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전승교육사는 국가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무형유산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하고,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인정되고 있어¹⁶⁾ 전문성과 역량을 기반으로 우수

3.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불량한 경우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이수자의 선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5) 전수교육 참여실적(30점), 전승활동 실적(30점), 전승활동계획서(40점)를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고, 장려금 지급은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16)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이수자를 추천할 만한 자격을 충분히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고,
무형유산 전승자의 고령화 심화 등 전승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역량있는 우수 이수자를 발굴하고 전승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전부 수용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84

국가무형유산의 전승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전승교육사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국가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승교육사로 인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국가무형유산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나. 시·도무형유산 보유자로서의 경력이나 전승교육사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국가무형유산의 이수자가 된 이후 1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해당 시·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3.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4.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했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전승교육사 인정의 세부 기준과 기준별 배점 등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참고 1

무형유산 기본계획 등

1. 제2차 무형유산 기본계획 기본원칙 및 추진전략(2022~2026)

비전	함께 보전하여 모두가 누리는 무형문화재		
방향	◆ [보호대상] 개인·단체에서 공동체로 ◆ [지원체계] 보편형 지원에서 맞춤형 지원으로 ◆ [지향가치] 보호·보전을 넘어 가치창출·대국민 향유로		
추진 전략	모두가 함께하는 무형문화재 보전	지속적이고 창조적인 무형문화재 전승	일상에서 공감하는 무형문화재
핵심 과제	• 미래 지향적 무형문화재 보호체계 마련 • 무형유산 자원의 가치 발굴 및 확산 • 지역 문화유산 보호기반 강화 • 다양한 전승공동체 육성	• 종목별·전승자별 특성화된 지원 • 무형문화재 공개 및 교류기반 강화 • 시대에 부응하는 전승체계 구축 • 무형유산 산업화 및 다양한 일자리 창출	• 국민 친화형 무형유산 체험·교육기반 강화 • 무형유산 콘텐츠 및 향유기반 강화 • 세계가 공감하는 K-무형유산

2. 무형유산 기본계획 등 수립

○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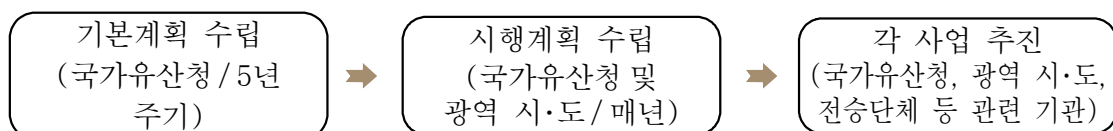
- 무형유산 분야에서 미래 환경에 능동적·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국내외 환경변화 및 인식변화 등을 반영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무형유산 정책 방향 제시
-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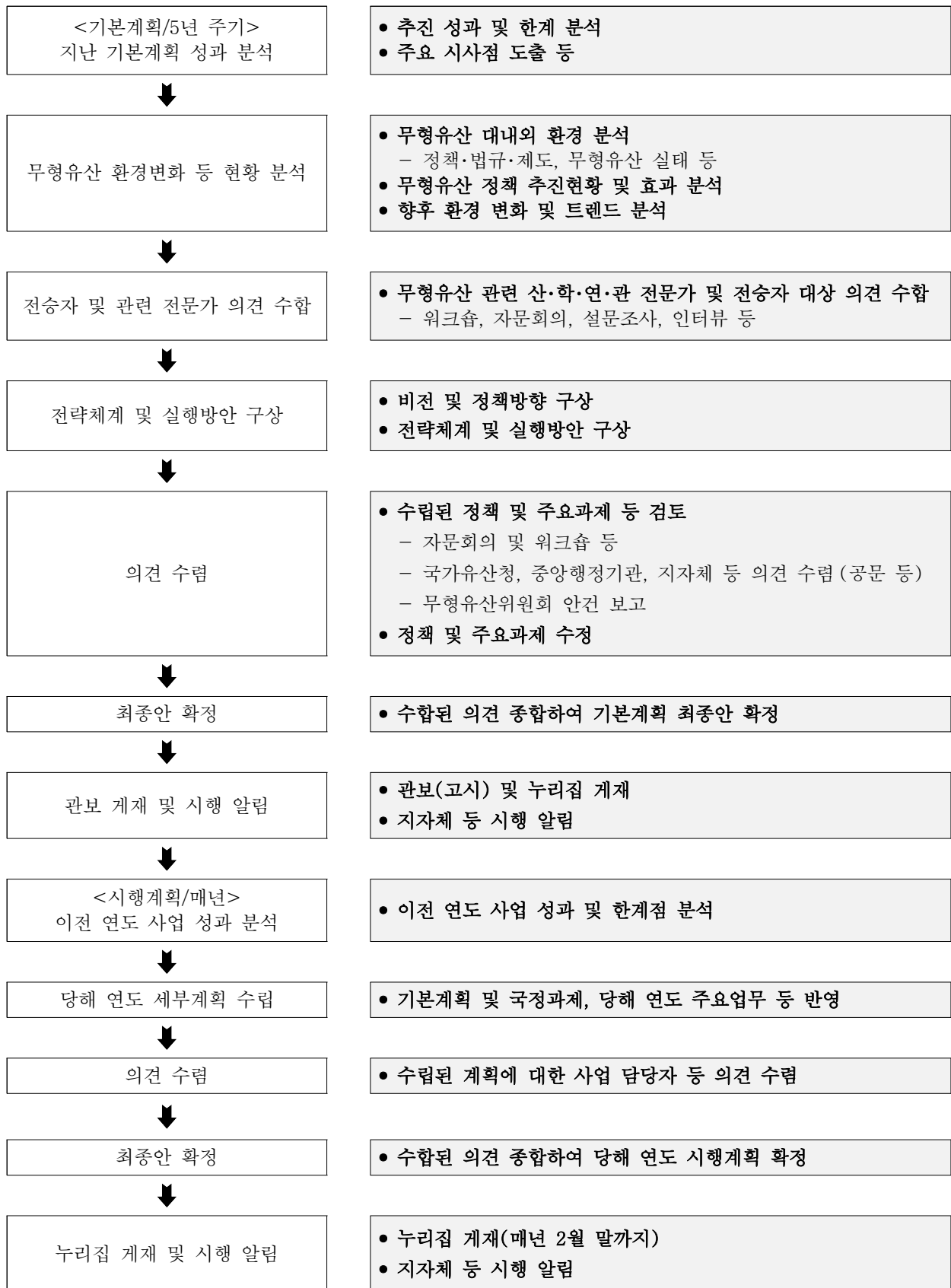
- 기 간 : 2017년~
- 수립시기 : (기본계획) 5년마다 / (시행계획) 매년
- 수립주체 : (기본계획) 국가유산청 / (시행계획) 국가유산청 및 광역시·도
- 수립근거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 내 용

구 분	내 용 범 위
기본계획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 무형유산의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 무형유산의 조사, 기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 무형유산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시행계획	•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 주요 사업별 세부 계획 • 그 밖에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공표방법: (기본계획) 관보 고시 등
(시행계획) 해당 기관 누리집 공고(매년 2월 말일까지)
- 추진체계



○ 추진 절차



1.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 인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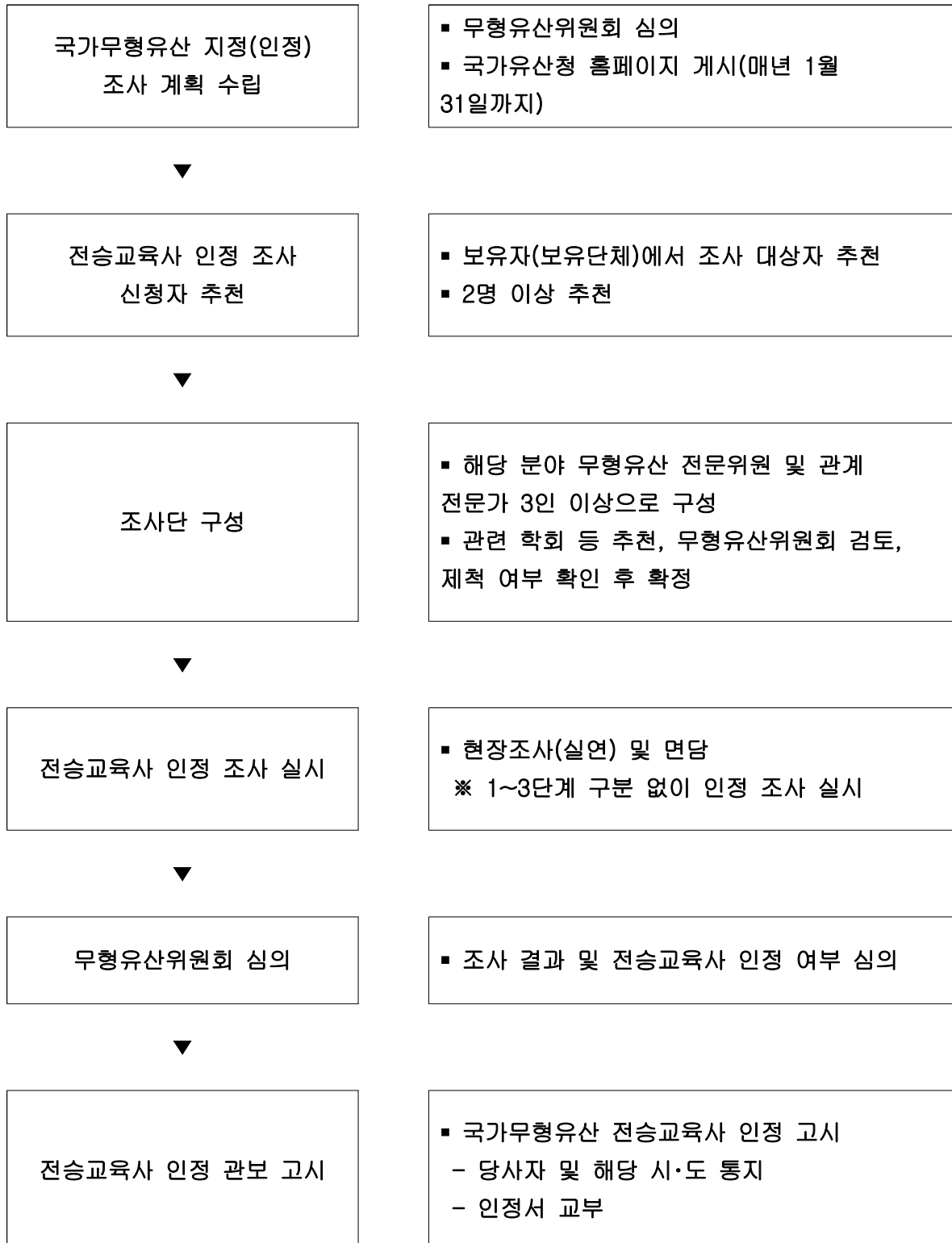
가. 대상 및 결격사유

- 기 간: 1964년~
- 대 상: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
 - 근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종 류	내 용
전승교육사	○(정의) 법 제19조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사람 ○ (인정요건) 시행령 제18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었 -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 의지가 높을 것 -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제1호 및 제2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인정이 취소된 날 또는 인정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추진 절차



2.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 전승교육사 인정 조사 조사지표

가. 전승능력(70점)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량 (40점)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40점)	○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별도 고시)	정성
전승역량 (15점)	해당 종목의 이해도(5점)	○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정성
	리더십 및 교수능력(10점)	○ 리더십 및 교수능력 정도	
전승활동 (15점)	이수자 경력(5점)	○ 이수자로 등록된 기간	정량
	전승활동 실적(5점)	○ 최근 5년간 보유자의 공개행사 참여 실적 및 최근 5년간 전승활동(공연, 발표, 전시, 국가유산수리·복원 등) 실적	정량
	관련 분야 입상 실적(5점)	○ 관련분야 수상 상격 및 실적	정량

나. 전승환경(20점)

구분	조사지표	측정기준	비고
전승기반 (10점)	조사대상자의 시설 수준(2점)	○ 필수적인 시설의 충족 수준	정성
	조사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수준(2점)	○ 필요 장비를 구비한 정도	정성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3점)	○ 조사대상자에 대한 평판 정도	정성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3점)	○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정성
전승의지 (10점)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10점)	○ 조사대상자의 전승의지 정도	정성

다. 전수활동 기여도(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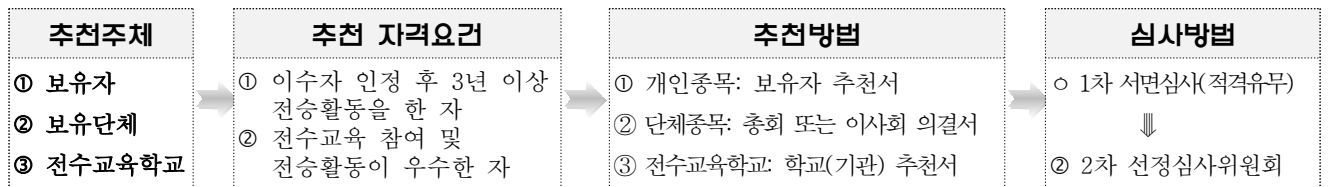
참고 3

우수 이수자 지원 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역량 있는 이수자 발굴하고 안정적 전승활동 지원을 통해 국가무형유산 전승 환경 미래 기반 조성
- (사업예산) 1,668백만원('24년 신규)
- (지원대상) 3년 이상 우수한 실적의 이수자 중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은 자
- (지원규모) 우수 이수자 290명(연 600만원 내외/ 최대 2년)

□ 지원절차



□ 추진현황

- 우수 이수자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2회('23.11.6., 8일/ 서울, 대전)
- 우수 이수자 선정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24.4.2.), 설명회('24.4.11.)
-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 규정 개정('23.11.20./ '24.4.5.)
-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점검('24.9.30.~11.18. 288명)
-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장려금 지급(1차 6.9. 290명/ 2차 11.27. 287명)

분야	예능(단체)	예능(개인)/춤	연희	전통기술	전통지식	합계
장려금 지급(1차)	50	55	68	62	55	290
장려금 지급(2차)	49	55	68	61	54	287